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,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납부 우선 규정을 변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나. 수수료 감면대상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추가함(안 제6조).
- 다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41조에 따라 우리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을 ‘수수료 없음’으로 변경함(안 별표 제2호다목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7. 22.~8. 11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납부방법) 수수료는 수입증지, 현금,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(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)과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
11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

별표 제2호다목 중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금액란의 “30,000원”, “20,000원”을 각각 “수수료 없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리
여부 통지를 받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4조(납부방법)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되 자치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,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	<p><u>제4조(납부방법) 수수료는 수입증지, 현금,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(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4. ~ 10. (생략)</p> <p><u>< 신설 ></u>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<u>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)</u> <u>과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</u></p> <p>4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·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(가)족이 신청하는 증명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」 개정 내용은 비용은 아니지만, 수입이 감소하는 사안임
- 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」 개정으로 감소되는 수입은 기술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
- 같은 조례 제3조의 별표 「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(제3조 관련)」에 따른 2020년 수수료 수입은 총 87백만원으로 5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재무국 세무과 최상남(02-2133-3440)